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법률 제2062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72호, 2025. 2. 18. 공포, 2025. 2. 21. 시행)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현행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 삭제)

-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지원,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통지절차, 부담금의
용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기 반영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비용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 징수비용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비

용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1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 등</u> <u>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 등</u> <u>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 등</u> <u>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 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등</u> <u>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 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u>	<u><삭 제></u>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
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
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
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
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
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
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
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
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

<삭 제>

와 같다.

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공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공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
제공미터당 2,200원

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공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공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
제공미터당 2,200원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

<삭 제>

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삭 제>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
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지원) 환
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
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
전구역의 지정·관리 사업에 대
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도의 샘물보전구역
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
질·수질 특성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
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
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
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
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
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
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

<삭 제>

<삭 제>

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삭 제>

<삭 제>

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플 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에 대한 지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79